

의안번호	2213512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5.11.24.
추 계 번호	25B5518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 제3항 신설	<u>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음</u>	의무·재량 규정
2	안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	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함. <u>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</u>	의무·재량 규정
3	안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	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, <u>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(제3항)</u>	의무규정
4	안 제36조의2(위험성평가의 심사) 신설	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98조(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)	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, <u>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(제3항)</u>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98조의2 (자율안전검사의 심사) 신설	고용노동부장관은 제9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사업주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7	안 제171조(벌칙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. 제36조의2, 제90조제4항, 제98조의2제1항,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	의무규정
8	안 제175조(과태료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2항) 1. <u>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</u>	의무규정
	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4항) 2의2. <u>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</u> 5의2. <u>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</u>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 제3항 신설	×	-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참조
2	안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3	안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	—	• 미대상 —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 —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36조의2(위험성평가의 심사) 신설	—	• 미대상 —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5	안 제98조(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)	—	• 미대상 — 현행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"안전검사대상기계등")을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(이하 "안전검사")를 받도록 규정하면서²⁾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(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)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⁾ —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⁴⁾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6	안 제98조의2(자율안전검사의 심사)	×	• 미첨부 —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— 본문참조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7.8	안 제171조(벌칙) 안 제175조(과태료)	—	• 미대상 –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⁵⁾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

2. 상세 사유

□ (안 제5조, 제29조)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(안 제5조제3항 신설)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
- 1)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 - 2) 제93조(안전검사)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"안전검사대상 기계등"이라 한다)을 사용하는 사업주(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94조,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)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(이하 "안전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 - 3) 제98조(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)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(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(이하 "자율검사 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(이하 "자율 안전검사"라 한다)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- 4) 제98조(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)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 - 5) 제2조(정의) 1. "비용추계서"라 함은 발의·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(이하 "비용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비용추계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(이하 생략)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내용 및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또한,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⁾
 -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, 정부로 하여금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재정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은 교육 대상과 교육 내용·기간·시간 등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, 지원 범위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98조의2)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(안 제98조의2제1항)으로, 현재 고용노동부 예산 및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- 또한, 개정안은 사업주가 자율안전검사의 심사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(안 제98조의2제2항)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안전검

6)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

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,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.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(이하 "특별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(이하 "채용 시 교육"이라 한다)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(이하 "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사 물량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가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사용상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사업⁷⁾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26년 기준 7억 4,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함⁸⁾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자율안전검사의 심사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의 규모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검사 시행 물량 및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7)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업(코드: 4152-351)의 내역사업

8) 고용노동부, 「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」, 2025.

참고

안전검사

※ 자료: 고용노동부

- 사업개요
-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가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사용상 안전성 확보
- 사업내용
- (안전검사)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*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 기계·기구가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지 검사**하고 증명서를 발급
 - *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 등 15종⁹⁾
 - ** 크레인, 리프트, 곤돌라(2년 주기, 건설현장은 6개월 주기), 그 밖의 위험기계·기구(2년 주기)
 - (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)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해 안전검사*를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인정
 - * 안전검사 품목별 검사주기의 1/2 주기(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6개월 주기)

□ 추진절차

